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측시설 조밀도 반영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강화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1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관측시설 조밀도 반영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강화	3
※ 참고자료	7
1. 기상관측시설 현황	7

I .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14112호】

1.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1.
3. 회부연월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 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대구·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관측시설 조밀도 반영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강화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매년 정하는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관측시설 조밀도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안 제8조제2항), 기상관측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매년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고장 예방·대응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u>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u>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u>관측시설의 조밀도, 관측시설의 구축</u> ----- ----- ----- ----- -----

현행	개정안
③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u>⑦ 기상청장은 매년 기상관측 장비의 설치, 고장 대응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간 관측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 기상관측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¹⁾’을 수립하며,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을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음.

또한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확정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지역 간 기상관측시설의 분포 불균형²⁾이 지속되고, 기상청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 작성지침 통보(11월) → 기관별 계획 제출(1월) → 기상청 검토·조정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심의 → 계획 확정·통보(4월)
 - 필요시 계획 변경(9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³⁾, 관측시설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장 예방·대응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측시설 조밀도 관련 사항이 작성지침 및 기상관측망 구축·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고장 예방·대응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같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역별 기상관측 조밀도 편차를 완화하고, 기상관측장비의 설치·고장 예방 및 신속한 복구와 유지관리 체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2) < 권역별 기상관측시설 수('25.6) >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합계
기상청 (조밀도, km)	110 (10.4)	103 (12.8)	33 (15.0)	50 (13.6)	45 (13.4)	102 (11.2)	82 (15.6)	83 (12.2)	43 (6.6)	651 (12.4)
전체기관	1,030	626	368	450	405	627	825	717	200	5,248

3) < 기상청 지상기상관측장비 장애발생 내역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시설(개소)	628	635	637	639	640
장애 건수(건)	331	330	385	541	600
장애복구시간(시:분)	42:51	35:34	34:07	35:25	33:40

문 의 처
02)6788-5542

참고자료

기상관측시설 현황(2025. 6.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AWS	강수량계	대기오염감시*	기타 (적설계 풍향풍속계 등)	합계
국가기관(5)	1,374	493	104	3	1,974
기 상 청	651	66	-	3	720
기후예측환경부	-	427	104	-	531
국 토 교 통 부	11	-	-	-	11
농 촌 진 흥 청	217	-	-	-	217
산 림 청	495	-	-	-	495
지방자치단체(17) *시 군구 포함	474	1,669	593	143	2,879
서울특별시	-	124	40	-	164
부산광역시	16	17	31	-	64
대구광역시	-	49	26	-	75
인천광역시	6	33	32	-	71
광주광역시	-	14	13	-	27
대전광역시	2	11	14	-	27
울산광역시	-	19	22	20	61
세종특별자치시	1	13	6	-	20
경 기 도	152	197	120	35	504
강원특별자치도	-	70	27	9	106
충 청 북 도	1	150	32	4	187
충 청 남 도	11	183	43	-	237
전북특별자치도	45	141	44	1	231
전 라 남 도	5	263	41	1	310
경 상 북 도	-	273	48	23	344
경 상 남 도	217	44	42	23	326
제주특별자치도	18	68	12	27	125
공공기관(6)	77	305	0	13	395
국립공원공단	70	82	-	-	152
한국도로공사	1	-	-	4	5
한국수력원자력(주)	5	30	-	-	35
한국수자원공사	-	193	-	-	19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	-	-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9	9
합 계	1,925	2,467	697	159	5,248

* 대기오염감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부착된 기상관측장비